

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[] 조정 부과 통지서
[] 환급

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[]조정 부과, []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.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통지내용		[] 조정 부과 [] 환 급				
계	부 과 금	미 수 부과금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[]조정부과금 []환 결정일	[]납부 은행 []환급 및 계좌번호	기 타

사 유 ([] 조정 부과 [] 환급)

납부통지서 코드번호:

- ※ 작성방법
- 수신란에는 [] 조정 부과 [] 환급 대상 사업자(납부의무자)의 업체명, 대표자 성명, 업체 주소를 적습니다.
 - 사유란에는 [] 조정 부과 [] 환급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	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	
우	주소			/ 홈페이지 주소				
전화()	전송()		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		
210mm×297mm(일반용지 60 g/㎡(재활용품))								